

사단법인 위드헤브론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위드헤브론(WITHHEBRON : 이하 본회라 한다)” 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사랑을 나누고 봉사정신 실천을 통해 지구촌 소외계층과 저개발국가 빈곤층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지원과 구호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저개발국가의 의료지원사업
- ② 저개발국가의 사회복지사업
- ③ 저개발국가의 교육지원사업
- ④ 저개발국가의 긴급구호사업
- ⑤ 저개발국가의 지역개발사업
- ⑥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 ③ 후원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1년 이내에 기금, 기물, 봉사 등을 제공한 자로 정회원 이외의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단, 후원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② 본회 제반 활동에의 참가권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②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 ③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징계)

- ①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와 설립 정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
 2. 본회의 구성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3. 본회의 정관과 규정의 준수를 거부하는 자
- ②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견책, 자격정지, 제명으로 한다.

제3 장 조직

제1절 임원

제10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 1인
- ②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이사장 포함)
- ③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인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재임기간 중 궐위 또는 유고 시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이사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또는 혈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적이사 정수가 10인 이하일 경우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임원 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시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시장이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5조(임원의 대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겸직금지)

- ① 이사는 법인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총회

제17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다음에 의하여 소집한다.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1회, 연도 초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④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서면 및 전자통신 등 연락이 가능한 방법으로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총회의 개최방식은 회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대면 및 비대면 등 방식에 제한이 없다.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③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④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⑥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주요사항

제21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한다.
- ③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회의 전에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회의 안건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④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회의록)

총회 의사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이 대표로 기명한다.

제3절 이사회

제2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1회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서면 및 전자통신 등 연락이 가능한 방법으로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이사회의 개최방식은 임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대면 및 비대면 등 방식에 제한이 없다.
- ⑥ 그 외의 규정은 총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6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정관변경에 부의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 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 ⑦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⑧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⑨ 운영위원과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 수익사업 관리자의 임면
- ⑩ 제9조제1항 징계의 의결
- ⑪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 출석이 불가능한 이사는 회의 전에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회의 안건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③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회의록)

총회 의사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이 대표로 기명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29조(구성)

- ①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외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하며, 운영위원에는 이사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30조(직무)

이사회 의 위임을 받아 총회의 의결사항을 실질적으로 집행 및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을 집행
- ② 중장기 신규 사업을 기획
- ③ 본회의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 감독

- ④ 본회의 창성을 위한 홍보 사업과 후원회 관리
- ⑤ 이사회에 부의할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 수익사업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5절 사무국

제31조(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2조(직원)

-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의 임면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3조(사무국의 직무)

- ①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본회의의 운영 및 재정 실무를 총괄한다.
-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의 운영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6절 본회의 지부 및 기타 기관

제34조(지부)

본회는 본회의의 사업을 위한 국내외 지부를 둘 수 있다. 각 지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연대활동)

본회는 사업을 위하여 타 기관과 연대해 활동할 수 있다.

제36조(부설 기관)

본회는 사업을 위하여 부설 기관을 둘 수 있다.

<h2>제4장 재산과 회계</h2>

제37조(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한다.
- ② 기본 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 과 같다.
- ③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제38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및 담보제공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① 회비
- ② 각종 기부금
- ③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④ 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수입
- ⑤ 후원물품(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및 일반 물품 등)
- ⑥ 기타 수입금

제40조(수익사업)

① 이 법인은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관 로고 및 CI를 이용해 제작한 물품 판매
2. 기타 부대사업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를 임명한다.

제41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이익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총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특정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42조(회계 및 감사)

①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감사는 회계 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본회의 상황에 따라 외부에 회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본회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 실적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5장 보칙

제43조(법인 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정관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4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제8회 정기총회의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 2012년 12월 15일

1차 개정: 2014년 8월 11일

2차 개정: 2021년 3월 19일

(주무관청 신고 기준)